

#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 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Expanding Role the Appraisers for the Technology Valuation in the Future

배효성\*\* · 엄성희\*\*\*

Bae, Hyo Sung · Eum, Sung Hee

### Abstract

This study, despite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corporate finance and technology value through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market valuation techniques, issue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valuation techniques are still coming continued. Therefore, pointing out the practical problems of current technology valuation system and valuation techniques presented within the appraisal industry's future challenges to expanding the role of the appraiser in the market. In addition, the role of the appraiser for the legal stability and reliability problems pointed out in the technology value assessment system, why was it important for describing the contents. Current technology in the valuation appraisers relevant professional institutions exist, but this is a private appraisers, a private appraisers technology valuation has conducted most. As a result, there is no legal responsibility for accountability on this valuation technique. Therefore, introducing improved technology direction to move the valuation system and after further appraisal industry within the valuation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scheme in the technology market.

**Keywords ▶** technology value, technology valuation, appraisal, technology finan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초 록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술가치를 통한 기업들의 금융 대출건수가 함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련 자격제도 및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술가치평가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술가치평가 시장에서의 감정평가사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향후 감정평가업계 내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공신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현행 기술가치평가에 있어 관련 자격사제도가 존재하지 만 이는 대부분 민간자격사이며, 기술가치평가를 민간자격사가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결과적 책임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가 없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나아 갈 개선방향을 소개하고 나아가 감정평가업계 내 기술가치평가 시장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단어 ▶** 기술가치, 기술가치평가, 감정평가, 기술금융, 지식재산권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4084).

\*\*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제1저자(baehyosung@naver.com)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법학박사, 교신저자(sunghee@kipa.org)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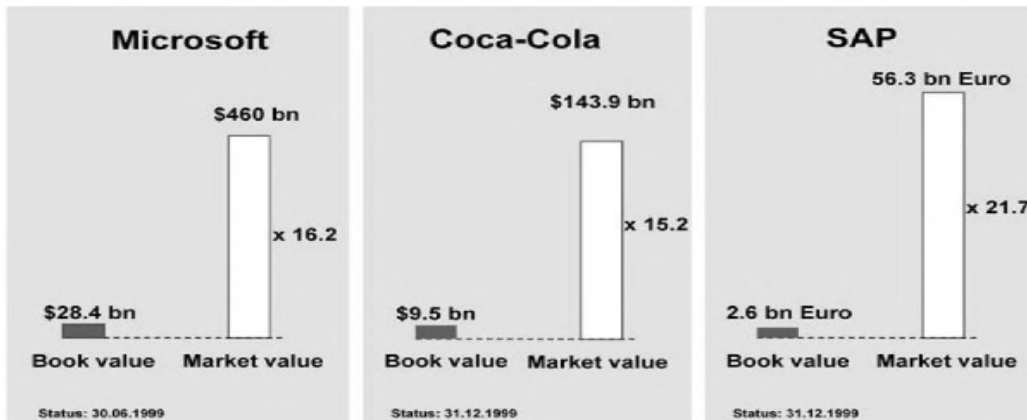
창조경제와 더불어 지식기반사회는 산업사회에 서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발전 원동력은 과거 자본, 노동 및 토지에서 특히기술, 디자인, 상표권 등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고 있다(정성찬·함석동, 2006). 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재산 권으로 인식되어왔던 부동산, 채권 등과 다른 창작 자나 권리자의 창조와 창작의 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이다(WIPO, 2013). 이미 기업의 자산 비중에 있어 아래 와 같이 무형자산의 가치는 유형자산을 넘어서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서 지식재산권의 확 보와 이를 이용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기 업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질 수 있다(James E. Malackowski, Keith Cardoza, Cameron Gray and Rick Conroy, 2007).

창조경제의 대두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금융

이) 활성화 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의 확보와 자금의 지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권의 활용과 사업화에 어느 정도 원활한 흐름을 볼 수 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부 분 사업자금의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2)</sup>

이에 정부의 주도로 이러한 중소기업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자금의 지원 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술 금융의 경우에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에 있어 평가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술을 평 가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 가치평가인력의 전 문성에 확실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 하여, 기술금융의 가장 기초적 부분인 기술가치평 가에 공신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기술금융의 규모가 증가 하고 있어 기술금융 관한 은행 간 경쟁 및 기술평가 수요가 급 격히 늘어날 경우 기술평가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품질이 떨어진 평가서에 의존할 경 우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심각해 질 수 있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금융에 있어 가장 중



자료 : Juergen H. Daum(2003)

<그림 1> for intangible asset companies, market value can exceed book value by up to 20 times

1) 기술금융이란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한다(강요셉, 2014,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 방향", ISSUE PAPER(2014-0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특허청/무역위원회의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사업화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을 꼽은 비율은 대기업 11.3%, 중견기업 19.0%, 일반 중소기업 29.4%, 벤처기업 35.6%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사업화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이 심한 것은 중소기업으로 조사되었다).

3) 서병호, 2015, "기술금융의 정착(soft landing) 필요성 및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4(17), 한국금융연구원

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관련 시장 및 기술가치평가 관련 전문 자격 현황을 살펴 보고 현행 기술가치평가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기술가치평가가 있어 안정성과 공신력의 확보를 모색하고 이로 인한 진정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sup>4)</sup>

## 2. 선행연구

기술금융에 대한 현황, 평가시장 및 과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성규·정주희(2012), 김치환·박현우(2014), 이병남(2015) 등이 있다. 이들 내용은 기술 및 지식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금융기관들의 대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지원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민간금융의 기술금융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실제 평가수행 실적이 저조하다. 현행 법상 기술평가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개별법상 규정하고 있어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기술평가기관을 법률상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술평가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는 가운데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서 등이 평가기관에 소속되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평가기관은 법률마다 지정요건이 상이하여 동일기관이 중복적으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술금융과 평가시장에서의 공신력 확대에 관한 연구로서 관계부처합동 보고자료(2013), 미래창조과학부(2014), 지식재산연구원(2013), 김지광(2012) 등이 있으며, 이들 내용은 기술금융과 평가시장이 미숙한 상황

서 공공평가 및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평가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시장 신뢰도와 수용 부족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거래시장 등 특허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공신력을 갖춘 기관 및 전문 인력 부재, 신뢰성 있는 평가방법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술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기술가치평가 시장에서의 문제점과 또한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지정 기관 및 관련 자격사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공신력과 법적인 책임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II. 기술평가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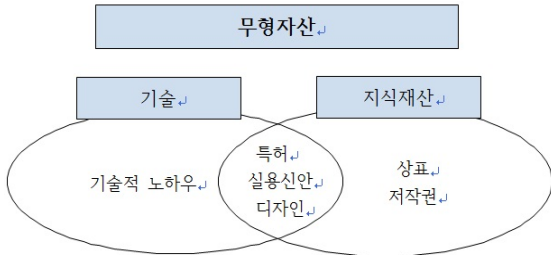
### 1. 기술평가의 정의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술은 가장 귀중한 지식의 형태 중의 하나이며, 기술은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sup>5)</sup>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기술가치평가’란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 담보 등 원활한 제공을 통하여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Technology)에 대하여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4) James E. Malackowski, Keith Cardoza, Cameron Gray, and Rick Conroy, 2007, The Intellectual Property Marketplace: Emerging Transaction and Investment Vehicles, *The Licensing Journal* 27(2), Wolters Kluwer Legal & Regulatory U.S.: 1

5) 김종범, 2001, “기술가치평가의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5(2), 한국정책과학학회

기술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6)</sup> 또한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즉,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창작성을 가지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재산적 권리로 인정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 기술과 지식재산의 관계

또한 기술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영어로 ‘technology assessment(TA)’로 표현되는 기술평가로서 기술발전이 사회전반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sup>7)</sup> 즉, 기술발전이 사회, 경제, 정치제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기술평가는 정부의 기술프로그램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불확실한 효과에 대하여 정책입안자에게 균형적인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의 개발을 중지 혹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결정의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고 할 수 있다.<sup>8)</sup> 기술평가의 또 다른 개념은 ‘technology valuation(TV)’으로 기술의 경제적 거래가치를 나타낸다.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는 TA와는 달리 TV는 개별기술의 가치와 상업성을 판단하는 평가라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기업이 가진 기술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sup>9)</sup>

<표 1> 기술평가의 종류

유형	내용
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함
기술력평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 조직,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개발, 흡수, 및 혁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등급,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될 수 있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7호, 2014. 6.18)

## 2. 기술평가의 목적

기술가치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sup>10)</sup> 기술평가의 목적은 네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개별 기술개발주체의 연구기술 개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과제 선정, 진도관리, 성과분석 등을 위한 평가가 있다. 둘째는 국가 등 기술지원기관의 기술과제 도출 및 기술자금 지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다.<sup>11)</sup> 기술지원과제 선정과 선정된 과제의 관리를 위한 타당성 분석,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이 그것이다. 셋째는 기술이전 대상을 평가하기 위

6) 산업통상자원부, 2014,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지식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을 정의하고 있다.  
 7) 박일권, 2005, “법적 관점의 특허권 가치평가와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박일권, 2005, 위의 학위 논문  
 9) 김종범, 2001, “기술가치평가의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5(2), 한국정책과학학회  
 10) 산업통상자원부, 2014,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11) 박순철, 2010, “벤처기술투자에 있어 기술사업화역량이 기술사업화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 것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 기술수출 시 타당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는 기술투자 및 기술 집약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위한 용도이며 실험실 창업, 벤처투자기관 등의 기술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sup>12)</sup> 기술의 가치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개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이와 같이 기술가치평가는 활용 목적에 따라 기술거래, 투자 및 융자, 현물출자, 전략수립, 청산, 소송 및 세무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sup>13)</sup> 이처럼 기술가치평가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용도에 따라 평가방법과 평가절차 등을 상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sup>14)</sup>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적용된 평가원칙, 가정의 적절성, 추정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평가에 대한 결과가 적절한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이전에 평가에 관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up>15)</sup>

<표 2>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목적	용도
이전·거래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금융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현물출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전략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청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 때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
세무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기타	특례상장 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4)

이처럼 기술가치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다.<sup>16)</sup> 예를 들면, 기술이전 및 거래가 목적인 경우 현금흐름활용법(DCF)을 활용하거나 세금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시장에서 유사사례를 찾는 방법도 있다. 또한 평가 대상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이라면, 대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방법, 산출과정, 자료출처, 공신력, 중요성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 3.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

오늘날 기업들 대부분은 토지, 건물, 설비 등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치는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치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인 기술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기업의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다.<sup>17)</sup>

기업들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지만, 정작 R&D의 생산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R&D의 성과는 특허, 기술자료 등의 기술 자산인데, 이러한 기술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 Ⅲ. 기술가치평가의 현황 분석

### 1. 기술평가기관 현황

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12) 김종범, 2001, "기술가치평가의 평가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5(2), 한국정책과학학회  
 13) 임동환, 2010,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1(4) 통권29호, 한국지방정부학회  
 14) 산업통상자원부, 2014,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15) 산업통상자원부, 2014,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16) 박선영, 2007, "특허기술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 김연용·장원경·기현희, 2006, "무형자산의 기업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9(1) 통권54호, 대한경영학회

지정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만이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따른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기술평가를 수행

하기 위해서 기술평가 관련 평가법령의 필요에 따라 또한 각 소관부처 마다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이에 관련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기술가치평가 기관 현황

평가관련 법령	소관 부처	지정기관 유형	지정기관	기관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관 제23조(현물출자) 제35조(평가기관 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기술보증기금, 전자부품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기술평가 제28조(기금의 업무)	기술보증기금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	기술평가기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행령 제4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공인평가기관 (주식 현물출자) 시행령 제6조의3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5
		벤처기업요건 시행령 제2조의3(5항)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촉법 지정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벤처기업확인기관 시행령 제18조의3(5항)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
발명진흥법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술성 평가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
			(사업성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평가 시행령 제39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평가기관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평가 제36조의2제3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15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	공공연구기관 출자의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평가	별도 지정 없음	-

18) 신진, 2000,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부동산연구 10, 한국부동산연구원

평가관련 법령	소관 부처	지정기관 유형	지정기관	기관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 교통부	기술평가기관 (산업재산권) 시행령 15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토 교통부	기술평가기관 법 22조 및 시행령 2조	감정평가사의 직무(토지등을 감정평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무체재산권의 평가 시행령 제59조	세금부과를 위한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감정평가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 위원회	상법인의 합병용 및 현물출자 평가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11	외부평가기관 지정 기업금융업무(인수업무/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 자원부	개발기술 사업화촉진 사업의 기술력 평가 제15조	담보대출을 위한 기술력평가기관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평가 법 제11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과학기술 기본법	미래창조 과학부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평가 제20조제4항제6호	연구기획평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관리 제7조	연구개발사업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로 정의)	1
농림수산물 과학기술육성법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제8조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물과학기술로 정의)	1
건설기술진흥법	국토 교통부	기술평가기관 제16조의3	전문기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로 정의)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부	개발사업 기획 관리 평가 제5조의2	기획·관리·평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로 정의)	1

자료: 기술평가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재구성

이와 같이 기술가치평가 기관의 선정에 있어 각 부처의 공고를 통해서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통해 지정하고 있으나,<sup>19)</sup>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으며,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한 법령 및 소관부처가 다양함에 따라 각 소관부처 마다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기술평가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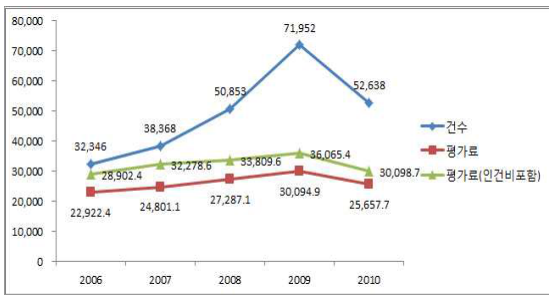
## 2. 기술가치평가시장 현황

2010년 말 현재 기술평가시장은 평가건수 기준

1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을 가지고 세부 충족 요건을 갖추어 지정하고 있다.

으로 총 52,638건 평가료 수입기준으로 약 301억 원(순수 평가료 기준으로는 약 257억 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가치평가 건수와 평가료 수입은 연평균 8.5%이상의 증가를 이루고 있으며,<sup>20)</sup> 지식재산권의 활용의 시대적 요청과 더불어 기술 금융의 확대 및 창조경제의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단위 : 건, 백만 원)



자료 : 지식경제부/Kiat/Kibo(2011)

<그림 3> 국내 기술가치평가시장 현황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토대로 한 기술금융의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sup>21)</sup>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기술금융으로 인한 자금의 회수나 차용금액의 변제 부분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금융의 경우 평가기관과 취급기관인 은행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기관이 평가함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이 발생할 경우 책임문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 3. 기술가치평가 관련 기관 및 자격 현황

현재 기술평가사는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수여하는 민간자격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협회는 가치평가사의 기능 및 역할을 ①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에 기반한 기업가치평가, ②벤처기업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컨설팅, ③M&A의 기업가치평가, ④특허침해소송의 가치평가, ⑤기업의 경영전략 및 가치향상 방안 수립, ⑥국제적인 투자 및 M&A 등에 전문가로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술가치평가사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22)</sup>

<표 4> 기술가치평가 직무영역 모형

영역	세부 내용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 기반의 기업가치평가	기술·시장동향 조사·분석, 기술인증,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경영에 관한 컨설팅	기술경영컨설팅, 기술정보서비스
기술거래	기술거래, M&A 등의 인수합병 관련 무형자산평가
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자료 : 기술평가 전문가격증 제도 도입 방안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가치평가 자격과 관련하여 기술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은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 전부이고,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민간단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자격증은 현황을 살펴보면, (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기업평가원, (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기술보증기금이 있으며, 내부기관에서 자체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있다.<sup>23)</sup>

20)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기술평가시장은 평가건수 기준으로 총 52,638건 평가료 수입기준으로 약 301억 원(순수 평가료 기준으로는 약 257억 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가치평가 건수와 평가료 수입은 연평균 8.5%이상의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지식경제부, 2011, 기술평가시장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

21) 2014년 7월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1922억에서 12월 8조 9247억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 2011).

22) 류태규 외 9명, 2013,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최종보고서

23)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증 발급 현황은 민간단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기업평가원, (사)



기술가치평가 전문적 자격증 외에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등은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있어 요구되는 전문 인력의 자격증으로서<sup>24)</sup> 전문적 기술가치평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기술가치평가가 가능한 전문 자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술가치평가에 전문 자격증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자격증의 발급 기관이 분산되어 있으며,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등도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기술가치평가 전문 자격증의 발급주체와 자격증의 성격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급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사 현황을 알아보고 더불어 외국의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사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는 사단법인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01년도부터 발급을 시작하였다. 기업·기술가치평가사(KCVA; Korea Certified Valuation Analyst)는 ACVA(국제가치평가사협회)의 한국 Charter Member인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KVA)에서 인증하는 가치평가 자격으로서, 미국 IACVA/NACVA에서 인정하는 가치평가 전문가 자격인 ICVS(국제가치평가사)의 한국 내 사전자격(pre-qualification) 중 하나이며, 지정된 교육 및 주·객관식 시험(Two Part, 4시간)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며, 평균 합격률은 35% 정도이다. 2016년 9월 기준 약 5,000여명의 교육이수자가 있으며, 이중 2,300여명이 기업·기술

가치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sup>26)</sup>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평가 전문 인력양성과 기업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극대화를 위한 기업 기술가치평가사 양성, 기술의 개발, 확산,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가치분석 및 방법론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기업가치평가사

기업가치평가사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며, 자격요건 및 절차는 기업가치평가사 양성과정 이후 자격시험 등 과제에 대하여 자격증을 부여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하여 연 2~3회 교육진행을 실시하고 있고, 2013년 12월 기준 기업가치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자는 약 1,000명에 이르고 있다.<sup>27)</sup> 또한 한국기업평가원 내부 규정으로 자격증을 부여받은 이후에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 3) 기술평가사(1급~3급)

기술평가사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및 절차는 기술보증기금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발급해오다가, 2011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동향조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수교육으로 2년에 1회 연수를 의무화시키고 있다.<sup>28)</sup>

### 4)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그 직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등이 있으며, 내부기관에서 자체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다(박성규·정주희, 2012, 감정평가사의 기술가치평가시장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가목에 따르면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있어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25) 국가공인 기술가치평가사 제도의 도입의 논의가 있었으나 기존 민간자격사 단체와 관할 부처 간 합의가 어려움이 근본적 원인이다.

26)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valuation.or.kr/guide/certificate.php>

27) (사)한국기업평가원 홈페이지, <http://kiv.or.kr/skin38/>

28)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www.kibo.or.kr/go\\_page.asp](http://www.kibo.or.kr/go_page.asp)

무로 하는 전문가자격사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sup>29)</sup>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등을 수행한다.<sup>30)</sup>

「감정평가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sup>31)</sup> 감정평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재화가 그 대상이 된다.<sup>32)</sup>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영역에 있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도 그 대상이 됨에 이견이 없음은 분명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식재산권 평가 전례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22건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5년 53건을 시작으로 2011년 214건까지 연평균 약 28.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sup>33)</sup>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영역에 있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통한 역할의 증대 및 기존 민간 전문 자격사들과의 역

할 조정 및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외국의 기술가치평가 기관 및 자격사

외국의 경우에는 Valuer, Valuation Analyst 및 Valuator 등으로 불리는 가치평가전문가가 존재하며, 투자컨설팅, 소송지원, 납세 및 신용평가 등을 위한 별도의 기업가치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무형 자산가치평가 및 벤처캐피탈, 대형 회계법인, 컨설팅 기업에 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전문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미국은 1980년 「Bayh-Dole법」 제정 및 1995년 「국가기술이전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술, 특히, 지식재산권 등 기술계 무형자산을 다루는 대규모 평가전문회사, 회계사무소, 벤처투자사 등 민간기관이 기술 가치평가 및 기술거래시장을 주도해 왔다.<sup>34)</sup> 회계사 자격을 획득한 후에도 10년 정도의 기업가치평가 관련 경력을 필요로 하며, 정부 관계부처 활동 및 MBA 학위 취득 후에도 10년 이상의 가치평가 관련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sup>35)</sup>

또한 이러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도 미국 기업가치평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NACVA)와 같은 전문기관의 교육 및 시험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6)</sup>

29)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가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6년 1월 19일에 제정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0) Q-Net 홈페이지,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0>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타 재산)에 따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삭제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33)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광, 2012, “특허권 가치평가 영역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 KAPA FOCUS 가을호, 한국감정평가협회).

34) 손수정 외 3명, 2014,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로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정책연구 2014-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종보고서

35) 이병남, “特許技術の事業化 促進을 위한 法制度에 관한 研究”, 2015,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6) 류태규 외 9명, 2013,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최종보고서

〈표 5〉 유럽의 나라별 기술가치평가 관련 기관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기관	Oxford-Innovation	Steinbeis	OSEO	Senter Novem	CDTI

자료 : 박성규·정주희(2012)

또한 독일과 유사한 기술가평가 관련 민간자격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 수여 및 관리기관과 자격요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미국기업가치평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NACVA)를 중심으로 미국평가사회, 자산평가원 및 기업평가원 등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평가 관련 민간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NACVA의 공인가치분석사(Certified Valuation Analyst: CVA)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를 전제로 하여 실무경험과 협회 주관 훈련프로그램 치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며, 가치평가분석사(Accredited Valuation Analyst: AVA)는 실제적인 기업가치

평가 경력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sup>37)</sup>

#### 4.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

외국의 기술가치평가 관련한 기술가치평가기관 및 자격사를 살펴보면, 유럽 대부분 국가 및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가치 평가 업무가 수행되며, 주로 전문가 그룹 혹은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및 독일의 경우 관련 협회에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 협회에서 민간자격사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문 자격사들 중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자격사가 기술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특許이유

〈표 6〉 미국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 현황

기술평가사 유관 자격증	자격증수여 및 관리기관	자격요건
CVA (Certified Valuation Analyst)	NACVA	공인회계사(CPA) 자격증, NACVA회원, 실무경험과 협회 주관 훈련프로그램 이수, 추천서 제출
AVA (Accredited Valuation Analyst)	NACVA	CVA자격증과 유사하지만 공인회계사 자격 대신 2년 이상의 기업가치평가 경력을 요구
CFFA (Certified Forensic Analyst)	NACVA	기업·금융관련 법정소송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경력과 지식을 지닌 전문능력
AM (Accredited Member)	미국평가사회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학사학위자가 2년 이상의 기업기술가치평가 경력을 갖추고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평가보고서 제출 및 스크리닝 통과
MAI (General Member of AI)	자산평가원 (Appraisal Institute)	학사졸업(4년제) 후에 필기시험 통과
CBA	기업평가원 (Institute of Business Appraisers)	IBA의 회원으로 학사학위이며 IBA의 24시간 이상을 포함한 전체 9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 5년 이상의 기업가치평가 경력 및 4부의 추천서 제출과 응시료 및 IBA 회원으로서 6시간의 출석 시험, 숙련정도, 전문지식과 판단력을 증명할 수 있는 2편의 평가보고서(Demonstration Report) 제출 후 심사결과 합격 시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

자료 : 류태규 외 9명(2013)

37) 류태규 외 9명, 2013,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최종보고서

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감칙 제23조 제3항).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평가자격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존재한다.<sup>38)</sup>

## IV. 기술가치평가의 문제점

### 1.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 제도의 기준 미비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전문 자격증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자격증의 발급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등도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기술가치평가 자격은 민간 단체에서 부여하는 자격증과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국가공인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기술가치평가의 대부분이 민간 자격사인 기술가치평가사가 대부분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자격증 발급 대상을 제한을 두어 기관 내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을 통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술가치평가 전문자격사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제도의 현상이다. 이처럼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사제도의 통일화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자격사제도의 실패는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전문성을 결여시킬 우려가 있다.

### 2.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공신력 부족

과거 기업들은 유형자산만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형자산도 기업의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

다. 또한 이를 통한 다수의 기업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술가치평가서에 대한 공신력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술평가에 있어 평가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가치 또는 등급 산정에 반영한다. 기술평가는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평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된 기술은 전문가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sup>39)</sup> 이에 평가된 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는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평가서를 가지고 기술보유 해당 기업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 일부는 그 동안 축적해온 평가 전례자료를 가지고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기술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금액에 대한 사전적 심사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평가서가 발급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과다 평가된 기술가치의 경우 지정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믿고 대출금을 지급해준 금융권은 고스란히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기술 보유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기술 거래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sup>40)</sup>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증대로 인한 그 수요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공신력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3.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책임소재 미비

현행 기술가치평가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그 결과적 책임소재를 찾아보

38) 황규희 외 3명, 2011, 기술평가 전문자격의 발전 및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보고서

39) 박현우·이종택, 2012, “초기단계 기술의 가치평가 방법론 적용 프레임워크”, 기술혁신학회지 15(2), 한국기술혁신학회

40)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기술거래 당사자 간의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박권철, 2004, “기술가치평가기반 IT 중소기업 지원 방안”, 과학기술 정책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 어렵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르면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과실 책임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술금융의 경우 현행 법률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지정기관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나 부실화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회수에 있어 평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법적인 책임 소재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은 기술가치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기술금융의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6년 기술담보제도의 도입 및 이를 위한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1990년대 말 벤처 붐으로 인해, 기술적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기술평가가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해 있는 기술가치평가 영역은 최근에 그 관심과 집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가치평가 관련 법령상에 아무런 법적인 책임소재가 없는 상황 하에서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미래는 보장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술가치평가제도가 활성을 위한 관련법의 합목적성<sup>41)</sup>이 결여된 채로 기술가치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 아마도 과거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이에 기술가치평가 영역은 목적별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관련 전문성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집단에서 맡아 실시되고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문제점을 키운 것으로 생각된다.

## V. 기술가치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1.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제도의 개선

기술가치평가제도가 갖는 현행 관련 자격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로써 관련 자격사제도의 통일화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관련 전문자격사 역시 민간자격사이며,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 역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발급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 및 관련 전문 교육도 상이하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 관련 민간자격사가 갖는 문제점은 국가공인 자격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관련 법령에서 기술가치평가 관련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과 지침을 관련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강화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규모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시장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 내에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술가치평가 실적은 타 목적별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평가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으로 기술가치평가가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타 전문자격사 및 기술평가 전문평가 기관에 비해 부족하다.<sup>42)</sup>

이러한 감정평가업계 내 경험 부족은 전문성 약화

41) 법의 합목적성이란, 법이 존재하는 그 시대의 사회나 국가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734&cid=47333&categoryId=47333> 방문일자: 2016. 10. 3.).

42) 감정평가사의 기술가치평가 업무에 관하여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의 일부로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타 전문자격사 및 전문평가기관에 비해 실무경험이 부족하다고 한다(박성규·정주희, 2012, 감정평가사의 기술가치평가시장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를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상대적으로 물건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바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경우 평가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향후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감정평가사 개인이 갖는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감정평가업계 내 기술가치평가 시장에 대한 참여가 적은 것이다. 하지만 감정평가업계 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확대방안은 해결해 나갈 과제일 것이다.

이에 감정평가업계 내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현재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격사협회 내 기술가치평가 관련 실무 매뉴얼에 대한 선행 연구가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며, 감정평가업계 내 기술가치평가 실무 매뉴얼 작성 및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 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관련 실무 매뉴얼 작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에 있어 권리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기술가치평가사와 업무 협약을 통한 전문지식에 대한 공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3.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 제고

현행 기술가치평가 시장 내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단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 및 전문기관에 대한 책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만 가지고 있다. 전술에서 언급한바 기술가치평가 수요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문지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기술금융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법적 안정성의 부존재로 인하여 기술금융의 취급 당사자인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으로 인한 기술금융의 본래의 목적과 다른 현실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술금융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 3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에 의한 자발적 기술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 기술 시장에서의 가치평가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수단적 기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방안적 수단으로써 현행 「부동산공시법」 제36조<sup>43)</sup>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법적 책임성에 대한 사항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감정평가사가 지는 법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성이 큰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의 법적 책임 규정과 다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사항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가치평가의 세부적인 업무분업에 따른 법적 책임의 분배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VI. 결 론

지식재산권은 세계 경제·사회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재산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물론 이를 이용한 활용에 있어 세계 각국

43)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 관심은 비상하다. 우리나라 또한 창조경제 국정기조에 맞추어 지식재산권을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적 창출에 대표적인 것이 기술금융을 들 수 있다. 기술금융은 담보자산이나 신용이 부족한 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금의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sup>44)</sup>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은 기존 유형자산의 가치산정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과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가치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유형자산의 가치평가와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권은 법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가치가 급등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급락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점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가치산정에 있어 노하우를 가지지 않고서는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자격사라고 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기술 가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그 과정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증이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관리와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법제정비를 통하여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기술금융의 가장 애로사항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바로 대출에 따른 위험성과 기술가치평가서의 신뢰도 문제이다. 현재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공신력 결여된 현재의 민간전문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는 전문성과 공신력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문성과 공신력의 문제를

국가공인 전문가자격사가 부담하고 있는 법적 책임의무를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공인전문자격사에 의해 작성된 기술가치평가서는 현재 민간자격사에 의해 작성되어지는 기술가치평가서보다 기술금융에 있어 위험성 발생의 부담을 어느 정도 분배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금융기관에도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서에서 제시된 기술가치보다는 좀 더 공신력 있는 평가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으로써 기존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부동산의 경우 가치평가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으로 가치평가를 담당하여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유형자산인 부동산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사의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실무 매뉴얼의 작성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가치평가의 각 항목별로 기술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격사의 역할과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민간자격사와 감정평가사 간의 업무상 협약을 통하여 기술가치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의 예측을 전문평가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시장성, 사업성), 대상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기술사를 통한 평가서가 제시될 수 있으며(기술성), 특허권의 침해나 권리의 안정성 등의 판단부분은 변리사가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권리성).

또한 최종적인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는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전문성이 높은 감정평가사가 사전에 해당 기술가치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기관 및 자격사가 판단한 결과를 기초로 최종 평가를 하므로써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와 달리 전문분야를 세부적으로 분업화 하여 가치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므로써 현재 기술가치평가가 가지고 있는

44) 손상호, 2015, “국내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선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4(24), 한국금융연구원

문제점인 전문성, 공신력 및 법적 책임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제시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방향을 통하여 현재 기술금융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기술가치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가짐으로써 나아가 기술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1. 강요셉, 2014,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 방향", ISSUE PAPER(2014-0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기술평가 전문가자격증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보고서
3. 김연용·장원경·기현희, 2006, "무형자산의 기업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9(1)(통권 54호), 대한경영학회: 199~216
4. 김종범, 2001, "기술가치평가의 평가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5(2), 한국정책과학학회: 23-45
5. 김지광, 2012, "특허권 가치평가 영역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 KAPA FOCUS 가을호, 한국감정평가협회: 32~45
6. 류태규 외 9명, 2013,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최종보고서
7. 박권철, 2004, "기술가치평가기반 IT 중소기업 지원 방안", 과학기술 정책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 박선영, 2007, "특허기술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0~56
9. 박성규·정주희, 2012, 감정평가사의 기술가치평가시장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0. 박순철, 2010, "벤처기술투자에 있어 기술사업화역량이 기술사업화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박일권, 2005, "법적 관점의 특허권 가치평가와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박현우·이종택, 2012, "초기단계 기술의 가치평가 방법론 적용 프레임워크", 기술혁신학회지 15(2), 한국기술혁신학회: 242~261
13. 산업통상자원부, 2014,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1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7호)

15. 서병호, 2015, "기술금융의 연착륙(soft landing) 필요성 및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4(17), 한국금융연구원: 3~9
16. 손상호, 2015, "국내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선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4(24), 한국금융연구원: 3~11
17. 손수정 외 3명, 2014,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로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정책연구 2014-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종보고서
18. 신진, 2000,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부동산연구 10, 한국부동산연구원: 323~354
19. 이병남, "특許技術의 事業化 促進을 위한 法律制度에 관한 研究", 2015,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 임동환, 2010,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1(4)통권29호, 한국지방정부학회: 101~119
21. 정성찬·함석동, 2006, "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산업재산권 19, 한국지식재산학회: 163~185
22. 지식경제부, 2011, 기술평가시장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
23. 황규희 외 3명, 2011, 기술평가 전문가자격의 발전 및 운영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보고서
24. Daum, Juergen H., 2003, *Intangible Assets and Value Creation*, John Wiley & Son
25. James, E. Malackowski, Keith Cardoza, Cameron Gray, and Rick Conroy, 2007, "The Intellectual Property Marketplace: Emerging Transaction and Investment Vehicles", *The Licensing Journal* 27(2), Wolters Kluwer Legal & Regulatory U.S.: 1~11
26. WIPO, 2014, *What is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WIPO
27. <http://kiv.or.kr/skin38/>, (사)한국기업평가원
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734&cid=47333&categoryId=47333>, 네이버 백과사전
29. [http://www.kibo.or.kr/go\\_page.asp](http://www.kibo.or.kr/go_page.asp),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30.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0>, Q-Net 홈페이지
31. <http://www.valuation.or.kr/guide/certificate.php>,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

- 논문 접수일 : 2016. 10. 17
- 1차 수정일 : 2016. 11. 15
- 2차 수정일 : 2016. 11. 29
- 게재 확정일 : 2016. 12. 16